

2019년 상반기 외부강의등 실태분석

2019년 상반기 외부강의등 실태 분석을 통해 지나친 외부강의로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고액 사례금 수수 등으로 인한 부패 발생을 예방

I 관련근거

-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 권고(권익위 행동강령과-2142호, 2015.9.25.)
- 외부강의등 신고 업무처리지침 알림(감사2016-2924호, 2016.11.18.)

II 외부강의등 신고 개요

- 신고대상 : 대가여부와 관계없이 직무와 관련된 모든 외부강의등
※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요청은 제외
- 신고내용 : 외부강의 일시, 요청사유, 사례금(실수령액)
- 신고원칙 : 사전신고
 -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도한 외부강의등 수행 금지
 - 외부강의 대가기준 상한액을 넘는 고액사례금 수수 금지

[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]

구분	사 장	임 원	그 외 직원
1시간 상한액(천원)	400	400	400
일일 상한액(천원)	600	600	600

- *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.
- * '18. 1. 17「부정청탁금지법」시행령 개정, 및 '18. 4. 17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으로 1시간 상한액 40만원으로 상향조정됨

- 상한액 초과 대가를 받은 경우 감사실로 신고하고, 초과 금액을 제공자에게 반환
- 외부강의등 월3회로 횟수 제한

Ⅲ 2019년 상반기 신고 현황

○ 신고현황 : 총 36건(26명)

구분	합 계	강의·강연	발표·토론	심사평가자문의결	기 타
건수	36건	-	1건	35건	-
금액	6,065,790원	-	186,000원	5,879,790	-

○ 직급별

구분	합 계	임원	1급	2급	3급	4급이하
건수	36건	2건	1건	13건	5건	15건
금액	6,065,790원	400,000원	136,800원	2,545,630원	689,880원	2,293,480원

○ 최근 3년 비교

구분	2016년	2017년		2018년		2019년
	하반기	상반기	하반기	상반기	하반기	상반기
건수	27건	14건	45건	32건	44건	36건
금액	9,326,000원	3,838,800원	9,460,000원	7,594,000원	10,031,600원	6,065,790원

○ 신고 결과

- ▶ 과다한 외부강의 : 없음
 - * 1인 최고 4회 출강하였으나, 월 3회 횟수 넘지 않음
- ▶ 외부강의 대가기준 상한액 초과 수수 : 없음

IV 향후계획

-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및 대가기준 준수 자체 점검 실시 : 2019. 10월
- 2019년 하반기 외부강의등 실태 분석 : 2020. 1월